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·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(‘20. 2.18 공포, ’20.8.18 시행)됨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세부 과태료를 규정하는 한편,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규정 (안 별표2)

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·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내역 규정

나. 시설 안전점검 규정 보완 (안 제26조의 2 제4항 및 제5항)

시설 소유자는 설계도서, 관리대장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, 해당분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안전점검 실시토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3. ~ 6. 2.)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1건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설계도서: 시설물의 준공도서(보수·보강공사를 포함한다)로서 종·평면도, 단면도, 구조물도, 시공상세도, 구조계산서,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
2. 시설물관리대장
3. 건설사업관리보고서(보수·보강공사를 포함한다)
4. 안전점검 자료
5.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

⑤ 안전점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(이하 "책임기술자"라 한다)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한다.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의2(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6조의2(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 1. 설계도서: 시설물의 준공도서 (보수·보강공사를 포함한다)로서 종·평면도, 단면도, 구조물도, 시공상세도, 구조계산서,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. 시설물관리대장 3. 시공관련 자료(보수·보강공사를 포함한다) 4. 안전점검 자료 5.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(이하 “책임기술자”라 한다)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한다.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<신설></u>	
④ (생략)	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41조 제2항제1호	80만원	120만원	180만원
나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	법 제41조	60만원	100만원	160만원

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경우	제2항 제2호			
다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를 출입한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3호	60만원		
라.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 제1항	90만원	150만원	240만원
마.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한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4호	10일 이내	10일 초과	최대 한도
		10만원	1일 초과 때 마 다 1만원 추가	합산액은 6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
바. 법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·양수, 합병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5호	60만원		
사. 법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·재개업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6호	60만원		
아. 법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7호	60만원	100만원	160만원
자. 법 제28조의5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8호	60만원	100만원	160만원
차. 법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 제2항 제9호	10일 이내	10일 초과	최대 한도
		10만원	1일 초과 때 마 다 1만원 추가	합산액은 6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

카. 법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·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 제1항제2호	90만원	150만원	240만원
타. 법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 제2항제10호	60만원	100만원	160만원
파. 법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 제2항제11호	60만원	100만원	160만원
하. 법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 제2항제12호	60만원	100만원	160만원

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-5275